

2022. 02.



『2022년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FAQ



1 사업공고 및 신청

Q 01	사업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01	<p>주관기관은 접수일 현재 충북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며, 참여기관은 공고문 참여자격에서 보듯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p> <p>*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하여야 합니다.</p> <p>주관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가 필수사항은 아니며, 법인사업자가 아닌 경우(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같이 규모가 작은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p> <p>다만, 주관/참여기관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p>
Q 02	신청 및 접수방법이 궁금합니다.
A 02	<p>온라인 신청(http://contact.cbtp.or.kr) 이후 관련 서류 총 8부(원본 1부, 사본 7부)를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본 7부는 제본하여 제출</p> <p>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인 2월 21일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p> <p>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컨택센터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가입신청 이후 관리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접수 마감일 접속인원 과부화로 인해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컨택센터 관련 문의 :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1877-8972)</p>
Q 03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곳이 조금 있는 경우에 접수시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03	<p>접수시간 연장은 불가하며, 오프라인 제출서류와 온라인 신청서류와의 상이한 내용은 온라인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p>
Q 04	사업 신청 시, 2개 과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04	아니오. 1개 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 05	관련 규정 및 공고문이 상이한 경우는 어떤 것을 적용받나요?
A 05	<p>동 사업은 공고문에 명시된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되, 사업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규정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들은 사업 공고문을 따릅니다.</p> <p>* 적용규정 : 충청북도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등</p>

Q 06	타 부처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인데 수행 과제 수의 제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06	<p>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동시 수행과제 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p> <p>즉, 총괄책임자를 비롯한 과제 참여 연구원은 수행 과제 전체를 합해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p> <p>* 다만,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퍼센트 이내에서 신청 가능</p> <p>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며, 그 중 총괄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p>
Q 07	참여연구원 자격기준이 궁금합니다.
A 07	<p>참여연구원의 학력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실무담당자는 참여연구원에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실무담당자는 총괄책임자와 함께 과제 수행/관리를 밀접하게 보조하는 참여연구원을 의미하며, 이를 단순히 연구행정 지원인력에게 일임하시면 원활한 과제 수행/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p>
Q 08	중기 컨소시엄과제를 신청함에 있어, 연차별 참여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08	컨소시엄형 중기과제를 신청함에 있어, 연차별 참여기관의 변경은 과제 수행의 내용상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Q 09	과제 참여인력의 최소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
A 09	주관 및 참여기관의 참여인력은 최소 10% 이상 참여율을 계상하셔야 하며, 특히 과제책임자는 전체 과제수행기간에 대하여 10% 이상 참여하셔야 합니다.
Q 10	연구개발 목표 설정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0	과제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며, 다만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은 자체평가가 아닌 외부 공인시험인증기관의 성적서 등을 통해 검증해 주셔야 합니다.

2 선정평가

Q 01	선정평가 방식과 일정이 궁금합니다.
A 01	<p>신규과제 선정평가는 일반적으로 접수 마감 후 1달 이내에 진행됩니다.</p> <p>평가방식은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실태조사)로 진행되며,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7인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후 우대배점을 포함하여 최종 산출됩니다.</p> <p>최종 점수 70점 이상 과제가 '지원 가능', 70점 미만이 '지원 제외'로 분류되며,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이 결정됩니다. 다만 70점 이상인 경우라도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예정 또는 과제 수행 중일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p>
Q 02	단독형과 컨소시엄형 또는 단기과제와 중기과제의 선정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02	<p>단독형과 컨소시엄, 그리고 단기과제와 중기과제에 대한 정해진 선정 비율은 없으며,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 가능' 과제 중에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p>
Q 03	현장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03	<p>외부전문가와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담당자가 충북소재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출하신 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수행 역량(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p> <p>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 타 지역에 소재한 본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현장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동영상, 사진 등)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p> <p>* 현장실태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 지역 사업장에 대한 추가 방문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p>
Q 04	발표평가 시 꼭 총괄책임자가 발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04	<p>예, 선정평가에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총괄책임자는 신청된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p> <p>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책임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이 발표할 수 있습니다.</p>

Q 05	신청 후 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발표자료를 수정된 내용으로 발표해도 되나요?
A 05	불가합니다.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진행하기 때문에, 발표자료는 사업계획서 내용과 일치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발표자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Q 06	선정평가지 우대배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06	6가지 항목에 한하여 최대 5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사항은 신청서 양식의 '[붙임 1] 가점사항 확인서'를 참조하시고, 해당기업에서는 관련 증빙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기타

Q 01	사업비 구성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01	컨소시엄 과제에 있어서 지원금의 60% 이상은 주관기관에 배정되어야 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02	연구비 지급시기 및 민간부담금 현금 납입 기한이 궁금합니다.
A 02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과제별로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부담금 현금 납입은 협약체결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수행기관의 협약 의무사항 미비(관련서류, 수정 사업계획서 등 제출 지연, 민간부담금 미납, 연구비 적정 계상 미비 등)로 인한 협약지연으로 연구비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03	민간부담금은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03	민간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금이나 공제받은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니(사업관리지침 제39조 제5항), 해당 내용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04	연구장비를 현물로 부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04	연구시설장비를 현물로 부담하시려는 경우에는 구입한 지 5년 이내(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함)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Q 05	현금인건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05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채용인력(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점까지 채용한 인력)은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기존인력인 참여연구원은 월 인건비의 50% 이내까지 인정됩니다.
Q 06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받는 자가 타 지역에 소재한 본사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06	본사와 지점의 재무·회계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있으신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는 충북 외여도 무방합니다.
Q 07	기술료 납부방식 및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07	주관기관 지원금의 10%에 대하여 정액기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Q 08	2023년도 과제는 어떠한 형태로 공고되는지 궁금합니다.
A 08	이번 공고와 같은 단년과제 및 중기과제(최대 2년)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지원규모는 2023년도 지자체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09	2021년도 선정된 기업이 올해 사업에도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09	별개의 과제를 신청하거나, 동일·유사과제라도 추가 연구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Q 10	기타 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10	사업 신청방법 등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양윤석 선임연구원(043-270-2232, ysyang@cbtp.or.kr) 김나영 주임연구원(043-270-2237, nayoung@cbtp.or.kr)